

## 배재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01.4.11, 일부개정 2016.6.15]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배재대학교 구성원의 성적 자율권을 확보하고 학내 성희롱·성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성희롱·성폭력의 정의 및 담당기관의 조직과 운영, 교육 홍보 및 징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 행위의 구성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주관적 판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 요구 및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해서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성차에 기반한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 하는 행위
  4.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 ②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 범죄 행위를 말한다.
- ③ 사건의 당사자라 함은 해당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지칭한다.
- ④ “2차 가해”라 함은 당해 사건을 누설하거나 사건 관련인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접촉하거나 화해를 종용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사건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사건관련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6.6.15.>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배재대학교 학칙에 적용을 받는 대학 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1. 교원(전임 교원, 시간강사 및 조교 포함), 직원(정규직 및 임시·일용직원 포함), 연구원 및 학생(재학생 및 휴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② 가해자(2차 가해 포함)만이 1에 포함될 경우도 이 규정은 적용된다.<2016.6.15.>

③ 피해자만이 1에 포함될 경우는 가해자측의 협의를 통해 사건을 처리한다.

④ 성희롱·성폭력으로 신고된 사건 발생이후 피해자와 가해자의 지위 변화는 그 적용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제4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사건 처리 과정에 있어 피해자 보호를 우선한다.(피해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당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한 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성명, 연령, 용모, 주소, 소속 및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자료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신고인과 피해자 보호는 전항에 준거한다.

**제4조의2(2차 피해의 방지)** ①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신설 2016.6.15.>

② 피해자, 신고인 및 참고인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긴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신고에 대한 결정 이전에 피신고인과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자 또는 이들이 속한 부서 등의 장에게 2차 피해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6.6.15.>

1.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 분리 조치

2. 피해자 주변 접근제한 조치
3. 기타 피해자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2장 상담 및 처리기구

제5조(성희롱·성폭력 상담실 설치) ① 학내 성희롱·성폭력사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해 배재인권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개정 2016.6.15.>

② 조직과 업무, 사건의 조사와 구제 등에 관한 절차는 ‘배재인권센터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6.6.15.>

제6조 “삭제”<2016.6.15.>

제7조 “삭제”<2016.6.15.>

제8조 “삭제”<2016.6.15.>

제9조 “삭제”<2016.6.15.>

제10조 “삭제”<2016.6.15.>

제11조 “삭제”<2016.6.15.>

제12조 “삭제”<2016.6.15.>

## 제3장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 “삭제”<2016.6.15.>

제13조 “삭제”<2016.6.15.>

제14조 “삭제”<2016.6.15.>

부칙

이 규정은 2001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